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세목별 감면내역
 -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자치구분)를 면제한다.
 - 등록면허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이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통보¹⁾함에 따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